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 1999. 6. 27.

제32차 개정 2025. 11.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 따라 대학이념,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0.18.]

제2조(교육과정의 구분 및 정의) ①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은 학점을 부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30.)

1. 교양교과는 대학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및 FIND핵심역량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전공 이외)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1.)

가. 교양필수 : 교양교과목 중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개정 2021.7.15.)

나. 교양선택 : 교양필수 이외에 선택 가능한 교과목 (개정 2021.7.15.)

2. 전공교과는 학과(부)에서 소속 학과(부)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전공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가. 전공필수 : 소속 학과(부)생이 갖추어야 할 전공능력을 교육목표로 하고 모든 소속 학과(부)생이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개정 2021.7.15.)

나. 전공선택 : 소속 학과(부)생이 갖추어야 할 전공능력을 교육목표로 하고, 모든 소속 학과(부)생이 선택 가능한 교과목 (개정 2021.7.15.)

3. 학과(부)에서는 전공교과목 이외에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7.15.)

가. 계열(학부)기초 : 전공교과 이수에 필요한 학문의 기본개념과 탐구방법을 익히는 교과목 (신설 2021.7.15.)

나. 계열공통 : 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과 배정 이전에 이수하는 교과목 (신설 2021.7.15.)

③ 비교과과정은 본교 교과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정으로 교

과과정을 보완하고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9.11., 2021.7.15., 2023.12.14., 2024.7.30.)

1. 삭제(2019.9.11.)
 2. 삭제(2019.9.11.)
 3. 삭제(2019.9.11.)
 4. 삭제(2019.9.11.)
 5. 삭제(2019.9.11.)
 6. 삭제(2019.9.11.)
 7. “비교과 프로그램”은 본교 비교과 운영부서와 학과에서 내부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방학중 활동 및 동아리 포함)을 말한다.
 8. “비교과 활동”은 학생 스스로 수행한 활동 중 비교과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활동(개별 봉사활동, 해외연수, 어학시험 등)을 말한다.
 9.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과정은 FIND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FIND핵심역량 기반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함으로써 비교과 과정의 유기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FIND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과정 분류 체계(별표1)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5.8.11.)
 10.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과정은 FIND핵심역량과 해당 학과(부)의 전공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④ 일반선택교과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24.7.30.)
1. 교직 : 교원자격(중등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
 2. 일반선택 : 교양교과 및 소속 학과(부)에서 제공하는 전공교과 이외의 타 학과(부)에서 개설된 전공교과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기타교과목 : 학생군사교육단 관련 교과목(안보학 등) (개정 2022.6.8.)
- ⑤ 편성과목이란 교과과정에 등재된 교과목을 말하며, 개설과목이란 편성과목 가운데에서 학년(의) 학기별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4.7.30.)
- [전부개정 2018.10.18.]
[조명변경 2018.10.18.]

제3조(편성방향)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FIND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4.7.30., 2025.8.11.)

- ② 최신의 학문적 동향과 산업계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4.7.30.)
- ③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전공)별로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된 전공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전공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4.7.30., 2025.8.11.)
- ④ 교양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구현을 위한 FIND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

식체계의 균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지인성, 기초문해, 자유학예, 체험소양)을 개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24.7.30., 2025.8.11., 2025.11.17.)

1. 상지인성 교육과정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25.11.17.)
2. 기초문해 교육과정은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25.11.17.)
3. 자유학예 교육과정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 습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25.11.17.)
4. 체험소양 교육과정은 자발적 활동과 체험을 통한 정서적·도덕적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25.11.17.)

⑤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을 위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부개정 2018.10.18.]

[조명변경 2018.10.18.]

제4조(FIND핵심역량) 상지 교육혁신 모델 FIND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응용역량 : 취창업과 생활경제에 구체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역량
2. 통합역량 : 학습자 개인마다의 고유한 융복합 능력을 키우는 통섭교육 중심의 역량
3. 소통역량 : 글로벌 표현역량과 지역협동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교육 중심의 역량
4. 자기발견역량 :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하는 자기동기 발현교육 중심의 역량

[본조신설 2018.10.18.]

[제목개정 2025.8.11.]

제5조(교육과정 개발 및 환류) ① 전공교육과정은 본교 및 학과(부)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공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24.7.30., 2025.8.11.)

1. 각 학과(부)는 소속 학과(부) 및 전공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과(부) 특성에 맞게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및 전공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개정 2025.8.11.)
2. 각 학과(부)는 전공능력기반 전공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25.8.11.)
3. 전공능력기반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부)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되도록 설정한다. (개정 2025.8.11.)
4. 각 학과(부)의 전공능력은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 영역별로 설정한다.
 - 가. 산업계 및 사회적 요구 분석, 내외 환경 분석, 학문 동향 분석, 교육 수요자 요구 조사, 졸업생 진로 분석 등의 연구 결과 반영

- 나. 진로 분야에 대한 직무 분석 결과 반영
5. 각 학과(부)는 전공의 체계적인 학문계통도와 전공 내 진로 분야별 학습로드맵을 설정한다.
6. 전공교육과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환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개정 2025.8.11.)
- 가. 전공교과과정에 대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 (개정 2025.8.11.)
- 나.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개정 2025.8.11.)
- 다. 설문조사 및 요구분석을 통해 전공교과과정 개발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 (개정 2025.8.11.)
7. 전공교과과정의 환류를 위해 학과(부)에서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학과(부)별 교원 워크숍과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8.11.)
8. 삭제 (2025.8.11.)
9. 삭제 (2025.8.11.)
- ②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FIND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24.7.30., 2025.8.11.)
1. 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교양교육과정(상지인성, 기초문해, 자유학예, 체험소양)을 개발하고, 각 교과목별로 FIND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설정하며, 설정된 연계성은 수업계획서 등에 표시한다. (개정 2025.8.11., [2025.11.17.](#))
2. 교양교육과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환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개정 2025.8.11.)
- 가. FIND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 (개정 2025.8.11.)
- 나.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개정 2025.8.11.)
- 다. 설문조사 및 요구분석을 통해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 (개정 2025.8.11.)
3. 삭제 (2025.8.11.)
4. 삭제 (2025.8.11.)
- [본조신설 2018.10.18.]
- ③ 각 학과(부) 및 FIND칼리지는 교육과정 개발 및 환류를 위하여 본 규정 제13조 및 제13조의2 보고서를 소정 기간 내에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11.)
- ④ 우리 대학 수업의 질 제고 및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FIND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환류에 활용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부서별로 분장한다. (신설 2025.8.11.)

1. 역량 진단 계획 수립 및 환류 운영 : 교무연구처 교육기획팀 (신설 2025.8.11.)
 2. 역량 진단 조사 및 기초 데이터 분석 : 기획처 IR센터 (신설 2025.8.11.)
- [제목개정 2025.8.11.]

제6조(교육과정 적용기준) ① 모든 학생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② 입학연도에 필수로 지정된 학점은 원칙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연도에 적용받았던 교양필수, 계열(학부)기초 및 전공필수 학점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축소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4.7.30.)
- ③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 학점, 적용 기준 및 특이자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30.)

[본조신설 2018.10.18.]

[조명변경 2019.9.11.]

[전부개정 2019.9.11.]

제7조(위원회 설치)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과위원회, 전공교과위원회,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 비교과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9.11.)
[전부개정 2018.10.18.]

제8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과 AI융합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5., 2022.4.20., 2023.12.14., 2025.7.2.)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30.)

1. 교육과정의 편성 · 개편 ·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3. 산업계 및 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편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4. 교양교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양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교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비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발주 및 연구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전부개정 2018.10.18.]

제9조(교양교과위원회) ① 교양교과위원회는 FIND칼리지학장과 AI융합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FIND칼리지 소속 영역별 주임교수 6인, 인문사회/이공/예체 계열을 대표하는 협

력학과 전임교원 3인, 전문성을 지닌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FIND칼리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5., 2022.4.20., 2022.6.8., 2023.12.14., 2024.7.30., 2025.7.2.)

② 교양교과위원회는 FIND칼리지 교학지원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20., 2024.7.30.)

③ 교양교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30.)

1. 교양교과의 방향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양과과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교육 수요자 요구 또는 만족도 조사 포함)
3. 교양교과 과정의 영역 구분, 개설학기 구분 등 교양교과 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양교과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양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

[전부개정 2018.10.18]

제10조(전공교과위원회) ① 전공교과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두고, 위원은 학장, 학과(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생대표 2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6.8., 2024.7.30.)

② 전공교과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전공교과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서 주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30.)

1. 전공 교과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전공교과의 개설 학년 및 학기의 구분 등 전공교과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의 전공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학과(부) 전공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

[전부개정 2018.10.18]

제11조(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 ①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는 각 학과(부) 전임교원, 산업체인사 및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과(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2.6.8.)

②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는 각 학과(부)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개정 2024.7.30.)

1. 학과(부)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
2. 학과(부) 교과과정 운영 및 모니터링
3. 학과(부) 교과과정 성과 분석 및 평가(만족도 조사 및 수요자 요구도 조사)
4. 기타 학과(부) 교과과정 및 비교교과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각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장은 소속 학과(전공, 학부)의 교과과정개발위원회 위원 위촉현황과 회의실적(회의록 포함)을 관리하고 소속 단과대학 학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6.8.)

- ④ 각 학과(부)장은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회의록 포함)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한다. (신설 2022.6.8.) (개정 2024.7.30.)

[전부개정 2018.10.18.]

[조명변경 2018.10.18.]

제12조(각 위원회 임기 및 운영)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대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④ 각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⑤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위원회와 전공교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 (개정 2024.7.30.)

⑥ 과목명 및 학기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전부개정 2018.10.18.]

제13조(교육과정 개발·개편) ①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란 대학 및 학과(전공)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FIND핵심역량(교양) 또는 전공능력(전공)을 기반으로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 및 개편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획 문서를 말한다.

③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5.8.11.]

[제목개정 2025.8.11.]

제13조의2(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① 개발·개편된 교육과정은 연 1회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 결과·계획 보고서란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차별 환류 중심 보고서를 말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 결과·계획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1.]

제14조(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원칙) ① 비교과과정은 중장기발전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기본 계획과 교육혁신 계획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 비교과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9.9.11.)

② 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비교과과정편성지침 및 비교과과정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2025.7.2.)

1. 삭제 (2024.7.30.)

2. 삭제 (2024.7.30.)

3. 삭제 (2024.7.30.)

4. 삭제 (2024.7.30.)

5. 삭제 (2024.7.30.)

[본조신설 2018.10.18.]

[제목개정 2024.7.30.]

제15조(비교과운영위원회) ① 비교과운영위원회는 학생취업지원처장, 학술정보원장, AI융합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심리상담·인권센터장, FIND-MYWAY 센터장, 국제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학생대표 또는 산업체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1.17., 2022.4.20., 2022.6.8., 2023.4.21., 2024.7.30., 2025.7.2.)

② 위원장은 AI융합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7.2.)

③ 비교과운영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7., 2023.4.21., 2024.7.30.)

1. 비교과과정 운영 및 관리 정책 수립

2. 비교과과정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심의

3. 학습역량, 취·창업, 학생상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④ 비교과운영위원회는 AI융합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2.6.8., 2024.7.30., 2025.7.2.)

[본조신설 2018.10.18.]

[전부개정 2020.5.14.]

제16조(비교과과정 개선 노력 및 환류) ① 비교과과정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비교과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학생 요구도 조사

2.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작성

3. 개선계획이 포함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

② 비교과과정 운영 부서장은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와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차기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비교과과정 운영 부서장은 각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학생역량강화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교내 구성원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4.7.30.)

[본조신설 2018.10.18.]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8.10.18.]

[조명변경 2018.10.18.]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교과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제5조(교육과정위원회)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87, 2005.5.31)

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38, 2005.9.6)

이 규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63, 2006.11.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 제1항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95, 2007.6.4)

이 규정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14, 2010.10.28)

- ① (시행일) 변경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영역의 이수구분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③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3, 2011.1.18.)

(시행일) 변경 규정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80, 2012.7.17.)

(시행일) 변경 규정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 2015.01.05.)

이 규정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1, 2015.06.05.)

이 규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49,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99,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1, 2017.05.12.)

이 규정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33, 2018.10.18.)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71, 2019.09.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교육과정의 구분 및 정의) 제3항, 제6조(교육과정 적용기준), 제7조(위원회 설치), 제14조(비교과과정 편성 원칙)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8, 2020.05.14.)

이 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48, 2020.08.27.)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739, 2020.11.2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11, 2021.7.15.)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0, 2022.01.17.)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2, 2022.06.08.)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945, 2023.04.21.)

이 규정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603, 2023.12.1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645, 2024.07.30.)

이 규정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468, 2025.0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지침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지침, 내규 등은 제규정기본규정 제7조1항에 따라 각 업무소관부서장이 개정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695, 2025.08.11.)

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673, 2025.11.17.)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9.09.11.) (개정 2021.07.15., 2024.7.30.)

FIND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과정 분류 체계

구분	꿈을 찾아가는 FIND 비교과과정			
핵심 역량	응용역량	통합역량	소통역량	자기발견역량
핵심 역량 정의	취 · 창업과 생활경 제에 구체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역량	학습자 개인마다의 고유한 융 · 복합 능력을 키우는 통섭교육 중심의 역량	글로벌 표현능력과 지역협동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교육 중심의 역량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하는 자기동기 발현교육 중심의 역량
하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강화 역량 · 현장적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 융합적사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표현 역량 · 협동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 정서 및 신체관리 역량
교육 활동 내용	진로 탐색과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학년별 맞춤형 진로지도, 전공 전문성 및 현장 적용 능력 강화 등 의 교육활동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여 개개인의 고유한 융 · 복합 능력의 발현을 돋는 교육활동	지역공동체에서 글로벌 공동체에까지 이르는 사회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과 협업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재학 중의 심리적 건강, 인 · 적성 상담 지원,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셀프리더십 등을 위한 교육활동